

무주 웰니스 식품 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11. 07.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전주대학교 무주 웰니스 식품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단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제품개발 지원 사업
3. 인력양성 사업
4. 마케팅 사업
5. 기업지원 사업
6. 기타 사업단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4조(구성) 사업단은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 참여기업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사업단에 네트워크팀, 인력양성팀, 제품개발팀, 마케팅팀, 기업지원팀을 둔다.

제6조(사업단장과 사업팀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및 사업팀장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전주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협약 변경, 협약 해지 등의 업무 총괄
4.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총괄
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

④ 사업팀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제7조(지원인력)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행정·기능분야에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 참여기업, 유관기관의 세부책임자와 사업단 사업팀장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사업단의 행정인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등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업팀간 사업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사업팀간 상호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참여기관간 계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
2. 기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회계연도) 본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조정될 경우 회계 연도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11조(법률행위의 주체) ① 본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사업단의 계약체결,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며, 사업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2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대응부담금, 기부금, 이자수입, 기
술료,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재정은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단회계 안에 RIS사업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3조(회계) 본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규정과 예산회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결산) 산학협력단장과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3. 사업비 결산 기준 등

제15조(보수 및 수당) ~①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임용하는 교육·연구·행정·기능 인력에게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유효기간) 이 규정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
업진흥사업공통운영요령및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